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5상, 226]

판 시 사 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국가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판 결 요 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 규정 내용과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참 조 조 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4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가합43657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5.5.27.선고 2004다30811,30828판결, 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다51288판결(공2010상,23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10.18. 선고 2013나2001653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012.12.18.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법의 이러한 규정내용과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5.27.선고 2004다30811,30828판결, 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다51288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이 정하고 있는 명시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이 사건 선정계획 공고의 내용과 원고가 그 공고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납부에 관한 각서 등 부두운영회사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사건 선정계획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행보증금 정산과 관련한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은 국가계약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의 약정으로서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계약상의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국가계약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